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으로 지정. 이들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781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업무에 갱신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 업무 추가(안 제42조)

○ 현행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업무 외에 ‘갱신’ 업무 위임 추가

*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부내의견조회(‘20.1월), 규제심사(‘20.2월), 입법예고(‘20.3~4월), 법제처 제출(‘20.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0호 중 “법 제99조제1항 및”을 “법 제99조제1항, 법 제99조제5항 및”으로,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 ----- -----.
1. ~ 19의2. (생 략)	1. ~ 19의2. (현행과 같음)
20. <u>법 제99조제1항</u> 및 법 제100 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u>지정</u> ,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등의 처분	20. <u>법 제99조제1항</u> , 법 제99조 <u>제5항</u> 및 ----- <u>지정</u> , <u>갱신</u> , ----- -----
21. ~ 27. (생 략)	21. ~ 27.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